

항공.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·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항공·경영교육혁신센터(이하 '센터'라 함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직무) 본 센터는 산업사회의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연구·개선하며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인증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육제도의 개선 및 인증평가의 지원
2. 교육과정, 교수수학방법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
3. 국내·외 인증 관련업무의 기획, 조정 및 홍보
4.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5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 (센터장) ① 본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교과과정위원회 및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교과과정위원회는 각 학부(과)장 및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.

③ 산학협력위원회는 각 학부(과)에서 추천한 5인의 교수,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며,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센터에 전임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.

제5조 (위원회별 업무)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인증프로그램(국제항공교육인증(AABI), 한국경영교육인증(KABEA) 등)의 추진과 교과과정의 개편 및 평가, 교수학습법의 개발,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의 개선 연구, 학습성과 분석, 평가도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.

② 산학협력위원회는 센터 사업의 취지에 입각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, 내용 및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, 산업계와 공동으로 인턴쉽프로그램의 개발,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담당한다.

제6조 (사업계획 및 예산서)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 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센터장은 본 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폐지규정)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「교육혁신센터 규정」은 폐지한다.